

「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대공연장 시설개선공사로 신설 및 교체된 무대장비(기계, 조명, 음향)등에 대한 구성 목록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반영.
- 지역 문화 진흥 및 시민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기획 공연 개최 시 관람료 할인을 위한 근거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대관 사용료 중 부속 설비의 변경 사항 및 구성 등 정비(안 별표1)
-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에 관한 세부 사항 신설(안 제11조의2, 별표2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 및 제15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

○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

○ 합 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대공연장 시설개선공사로 신설 및 교체된 무대장비에 대한 구성 목록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기획 공연 개최 시 관람료 할인을 위한 근거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문화예술회관의 시설개선공사로 인한 변동사항에 따른 조례를 재정비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및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,
-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시민과 예술인이 쾌적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의 안전점검을 세밀히 추진하길 바람.